

4. 니카라과(Nicaragua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적용대상	근로자	근로자	자영자 : 임의적용
보험료율(가입자/사용자)	14% (4% / 10%)	17.25 ~ 18.25% (4.75% / 12.50~13.50%)	보험료율 ↑
노령연금 수급요건	납부기간 750주 이상, 60세	납부기간 750주 이상, 60세	-
노령연금 지급률(최대)	가입자 평균소득에 따라 80% ~ 100%	70%	지급률 ↓
일시금	X	X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56년(사회보장), 1957년 시행
- 현행법 : 1982년(사회보장, 사회보장규칙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

3 적용대상

- 사회보험
 - 당연적용 : 근로자, 농업개혁 혜택을 받은 농부, 전문협회 회원, 일부 성직자, 협동조합원
 - 임의적용 : 자영자, 성직자, 사용자, 가입자이었던 자
 - 적용제외 : 계절적 농업근로자, 군인, 경찰
 - 특별제도 : 소방관, 경찰, 교정직을 포함한 내무부, 군인

4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사회보험
 - 소득의 4.75%
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소득 : 월 법정최저임금
- 월 법정최저임금 : 업종별 상이함; 4,176.49 córdobas(농업부문), 9,436.59 córdobas(건설, 금융, 보험 부문)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 없음
- 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족수당의 재원으로 쓰임

○ 자영자

- 사회보험
 - 월 신고 가입소득의 14%(노령, 장애, 유족 급여 및 피부양자보조금)
 - 성직자는 신고소득의 11.6%(노령, 장애, 유족급여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소득 : 4,176.49 córdobas(농업부문 월 법정최저임금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 없음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
 - 월 임금지급총액의 12.50%; 월 임금지급총액의 13.50%(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소득 : 월 법정최저임금
 - 월 법정최저임금 : 업종별 상이함; 4,176.49 córdobas(농업부문), 9,436.59 córdobas(건설, 금융, 보험 부문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 없음
 - 사용자의 보험료는 가족수당의 재원으로 쓰임

○ 정부

- 사회보험 : 없음, 단, 사용자로서의 보험료 부담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750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60세 도달자
 - 45세 이후 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최소 250주 이상 납부기간이 있고 가입시점부터 일반 퇴직연령까지의 주(week) 수의 1/2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어야 함
 - 광부 또는 위험업종 종사자는 납부기간 15년 이상이고 55세 도달 시 지급
 - 교사의 경우, 납부기간 1500주(남자), 750주(여자) 이상이고 55세 도달
 - 부분연금 : 납부기간이 250주 이상이나 750주 미만이고 60세 도달 시 지급
 - 연기연금 : 70세까지 연기 가능
 - 상시간병수당 :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급

- 피부양자보조금 : 부인, 장애가 있는 남편, 15세 미만 자녀(학생인 경우 21세, 장애가 있는 경우 제한 없음), 60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피부양 친족에게 지급
-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연금수급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봉급이 연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
- 노령연금은 해외 지급 불가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근로능력 상실정도가 67% 이상으로 판정되었어야 하며 장애 발생 직전 6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150주 이상이거나 총 보험료 납부기간이 250주 이상인 경우 지급
 - 부분연금 : 근로능력 상실정도가 50% ~ 66%로 판정되었으며 장애 발생 직전 6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150주 이상이거나 총 보험료 납부기간이 250주인 경우 지급
 - 상시간병수당 :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급
 - 피부양자보조금 : 부인, 장애가 있는 남편, 15세 미만 자녀(학생인 경우 21세, 장애가 있는 경우 제한 없음), 60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피부양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지급
 - 장애연금은 일반퇴직연령 도달 시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 -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없고 모든 소득활동으로부터 은퇴할 경우 일반퇴직연령에 도달하면 부분장애연금액이 완전장애연금액으로 인상됨
 - 니카라과 사회보장기관이 지정한 의학위원회는 3년마다 근로능력 상실정도를 평가하고 검토
 - 해외 지급 불가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였거나 수급할 자격이 있었던 경우 지급
 - 수급 가능 유족
 - 사망자와 최소 6개월 이상 동거했었던 유족배우자(여성), 장애가 있는 피부양 유족배우자(남성)(공동 자녀가 있거나, 유족배우자(여)가 임신했거나 사망자가 사고로 사망 시 예외)
 - 15세 미만 고아(학생인 경우 21세, 장애가 있는 경우 제한 없음)
 -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, 6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부양 부모 또는 조부모가 수급할 수 있음
 - 유족배우자 연금은 재혼 또는 동거 시 소멸하고 재혼 및 동거수당이 지급됨
 - 해외지급 불가
- 장제비(사회보험) : 사망자가 사망 당시 근로하여 가입 중이었거나 수급자였던 경우 지급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최근 375주 납부기간에서의 가입자 평균소득의 20%에 150주를 초과하는 납부기간 52주당 1% 가산하여 지급
 - 최저 월 노령연금액은 월 법정최저임금(직종별로 4,062.79córdobas ~ 9,346.59córdobas로 상이)
 - 부분연금
 - 250주 ~ 349주의 납부기간이 있는 경우, 1,910 córdobas 지급
 - 350주 ~ 449주의 납부기간이 있는 경우, 2,356 córdobas 지급
 - 450주 ~ 549주의 납부기간이 있는 경우, 2,884 córdobas 지급
 - 550주 ~ 649주의 납부기간이 있는 경우, 3,290 córdobas 지급
 - 650주 ~ 749주의 납부기간이 있는 경우, 3,656 córdobas 지급
 - 연기연금 : 60세 이후 납부기간 52주당 1%씩, 최고 5%까지 증액됨
 - 월 최대 노령연금액 : 최근 375주 납부기간에서의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의 70%
 - 상시간병수당 : 노령연금의 20% 지급
 - 피부양자보조금
 - 부인 또는 장애가 있는 남편에게는 노령연금액의 13.5% 지급
 - 수급자격 있는 자녀 1인당 각 노령연금액의 9%씩 지급
 - 수급자격 있는 부모 또는 조부모 각각 노령연금액의 9% 지급
 - 월 최대 노령연금액 및 피부양자보조금은 최근 375주 납부기간 중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100% 또는 월 1,500 US\$중 적은 액 지급
 - 급여지급시기 : 매월 지급, 성탄절에 추가 지급
 - 급여조정 : 급여는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11월 30일 조정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최근 375주 납부기간에서의 가입자 평균소득의 20%에 150주를 초과하는 납부기간 52주당 1% 가산하여 지급
 - 최저 월 장애연금액은 월 법정최저임금(직종별로 4,062.79córdobas ~ 9,346.59córdobas로 상이)
 - 부분장애연금 : 완전장애연금의 50%를 지급
 - 부분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종사한 직종 최저임금의 33%보다 많고 50% (장애등급에 따라) 미만이어야 함
 - 가입자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장애연금 총액은 가입자 평균소득의 50% 이상 이어야 함
 - 연기연금 : 60세 이후 납부기간 52주당 1%씩, 최고 5%까지 증액됨

- 월 최대 장애연금액 : 최근 375주 납부기간에서의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의 70%
- 상시간병수당 : 완전장애연금의 20% 지급
- 피부양자보조금
 - 부인 또는 장애가 있는 남편에게는 노령연금의 13.5% 지급
 - 수급자격 있는 자녀 1인당 각 노령연금의 9% 씩 지급
 - 수급자격 있는 부모 또는 조부모 각각 노령연금의 9% 지급
- 월 최대 노령연금액 및 피부양자보조금은 최근 375주 납부기간에서의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100% 또는 월 1,500 US\$중 적은 액 지급
- 급여지급시기 : 매월 지급, 성탄절에 추가 지급
- 급여조정 : 급여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11월 30일 조정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배우자연금
 - 사망자가 수급 중이거나 수급 자격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50% 지급
 - 장애인이거나(연령 제한 없음) 45세 이상인 여성유족배우자
 - 피부양자로 장애가 있거나 60세 이상인 남성유족배우자
 - 45세 미만 여성유족배우자에게는 2년 간 한시적으로 지급. 단, 고아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지급
 - 이전에 일시유족연금을 수급한 여성유족배우자는 재혼하지 않고 근로하지 않으며 다른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경우 60세가 되면 배우자연금을 평생 수급할 수 있음
 - 재혼·동거 수당 : 12개월분의 연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됨
 - 고아연금 : 사망자가 수급하고 있었거나 수급 자격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25%를 수급 자격 있는 고아에게 각각 지급, 완전고아인 경우 50% 지급
 - 최대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자격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 - 피부양친족 유족연금 : 다른 수급자격 있는 유족 수에 따라, 피부양 친족에게 사망자가 수급중이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최대 50%까지 지급
 - 급여조정 : 급여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11월 30일 조정

7

관리운영기관

○ 니카라과사회보장기관(Nicaraguan Institute of Social Security)

- <http://www.inss.gob.ni>
- 제도 운영 및 보험료 징수